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03호 2021. 5. 27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726호)
-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727호)
-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72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명시하고,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의 정비(안 제2조)

- 판매대행점에 전자금융업자 추가

나.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추가(안 제9조)

-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

다. 사용자의 준수 사항 추가(안 제10조)

-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

라.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구체화(안 제13조)

-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및 단서 구체화
- 개인 월 구매한도 70만원 설정, 연 구매한도 삭제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새마을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unjin0209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

3) 팩스 : 054-650-60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(전화: 054-650-6096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금융기관을”을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예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의 제목 “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”을 “(상품권의 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단서 중 “군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”를 “군수가”로, “있는”을 “있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류 상품권 외에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

제7조제3호 중 “잔액을 요구하는”을 “잔액이 발생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)”을 “(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①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발행된 상품권은”을 “사용자는 상품권을”로,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할인 및 수수료)”를 “(수수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상품권 활성화시책)”을 “(상품권 활성화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발전을 위하여”를 “활성화 및”으로, “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개최를 할 수 있으며, 경품지원을 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

이 한다.

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
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예천사랑상품권
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
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다
른 공사·용역·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
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
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의 할인 판매
액은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
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금융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 ·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 ·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의 협동조합,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9조의 상호저축은행과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.	<u><삭 제></u>
3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·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---.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“인센티브”란 상품권 판매대행점, 판매대행단체, 가맹점,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말한다.	<u><삭 제></u>
제3조(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) ①	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예천

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.

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예천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4조(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) <신 설>

① (생략)

<신 설>

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

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③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류 상품권 외에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

④ -----

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군
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효
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
우에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
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
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
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
한) ① 판매된 상품권은 예천군
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있는 다
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
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
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
항에서 정한 사업자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조(가맹점 준수사항) 가맹점은
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
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
때에는 위·변조 또는 훼손 등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
호를 준수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
권면 금액(상품권을 여러 장

-----, ----- 군
수가 -----
----- 있다고
인정하는 -----

-----.

제5조(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
한) ① -----

--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
1항에서 정한 사업자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가맹점 준수사항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
금액) 중 100분의 70 이상에
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
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
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
으로 지급할 것

4. ~ 6. (생략)

제9조(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)

<신설>

① (생략)

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
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
육성지원, 전통시장 지원업무,
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
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~

③ (생략)

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
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
환할 수 없다.

제12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군수

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

----- 잔액이
발생하는 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)

①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
자는 군수와 판매대행단체 협약
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③ ----- 제2항-----

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0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-----

----- 없으며, 판매대행점이나
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
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12조(수수료) <삭제>

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 할인구매는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상품권 활성화시책)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판매대행점, 판매대행단체, 가맹점,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-
----- 활성화 및 ----
-----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개최할 수 있으며, 경품지원을 상품권으로 할 ---.

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

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주민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, 맞춤형 복지점수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
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·용역·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의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

④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
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
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
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
비롯한 공연, 전시회, 축제 등
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
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.

있다.

<삭 제>

【소상공인기본법】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】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환전 및 구매한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예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환전한도 초과 신청 관련(안 제9조)

- 환전환도 초과 신청 제출 기관을 판매대행점에서 예천군으로 변경

나. 환전된 상품권 보관기간 변경(안 제10조)

- 환전된 상품권의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

다. 구매한도 변경(안 제11조)

- 개인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새마을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unjin0209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

3) 팩스 : 054-650-60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(전화: 054-650-609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”를 “제4조제3항에 따른 종이류 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정”을 각각 “등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0조제3항에 따른”을 “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판매대행점”을 “예천군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6개월간”을 “3개월간”으로, “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”을 “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2조제1항”을 “제13조제3항”으로, “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”을 “개인은 월 70만원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3호 서식]

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(개인)

구매자 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권 종	매수 (장)	구매금액 (원)
			5천원권		
			1만원권		
			3만원권		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및 내용]

1. 개인정보는 예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(10% 이내) 한도관리를 위해 수집되며, 할인 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수집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
2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.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4. 수집된 개인정보는 예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 한도관리를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할인구매를 위해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및 내용]에 동의합니다. ☐예 ☐아니오

본인은 상품권 환불 시 판매 당일(구매한 금융기간 영업시간까지)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,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. ☐예 ☐아니오

20 년 월 일

할인 구매자 : _____(서명)

※ 신분증을 지참한 만 19세 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, 대리 구매는 불가합니다.

※ 첨부서류 : 실명확인증표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예 천 군 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) ① ~ ③ (생략)	제4조(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
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.	④ ----- 제4조제3항에 따른 종이류 상품권 ----- ----- ----- -----.			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		
제5조(판매대행점 등록 취소)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<u>지정</u> 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<u>지정</u> 신청을 할 수 없다.	제5조(판매대행점 등록 취소) --- ----- ----- ----- <u>등</u> <u>록</u> ---- ----- ----- <u>등록</u> ----- -----.			
제8조(상품권 이용규약 등) ① (생략)	제8조(상품권 이용규약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 ----- 제10조제3항 및 <u>같은 조 제4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	

제9조(환전청구 및 환전기한) ① · ② (생 략)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<u>판매대행점</u>에 신청한다.	제9조(환전청구 및 환전기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 <u>예천군</u>-----.
제10조(환전된 상품권의 처리) ① (생 략)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<u>6개월간</u> 자체 보관하며,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<u>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</u>이 참관하여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	제10조(환전된 상품권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3개월간</u> ----- ----- <u>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할인가매 한도 및 수수료)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<u>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</u>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,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제11조(할인가매 한도 및 수수료) ① -- <u>제13조제3항</u>----- ----- <u>개인은 월 70만원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【개인정보 보호법】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입 법 예 고

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27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최근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증가 및 도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리 이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갈등을 방지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명자격 추가(안 제2조)

-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나. 임명절차를 임명과 해임으로 분리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
○ 이장 후보자 추천 방법 확대

- 입주자(임차인) 대표회의 또는 제5조의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

○ 해임 사유 추가

-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 가능

다. 공개모집, 이장 심사위원회, 임기, 임명장 교부, 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 조항 신설(안 제5조 ~ 안 제9조)

3. 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(이장의 임명)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

마. 입법예고 : 5월 중 실시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

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

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우편, 이메일 등

- (1) 보내실 곳 : 우)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(행정지원실)
- (2) 전 화 : 054-650-6836
- (3) 팩 스 : 054-650-6089
- (4) 이 메 일 : wldud1721@korea.kr

6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cheon.go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규칙명 :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건	비 고

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. 다만, 신설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.

4.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임명)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·면장이 임명한다.

1.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
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(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

3.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

다.

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해임) 읍·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읍·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3.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
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

제5조(공개모집) 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·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,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·면장이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,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·면장에게 추천한다.

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이장 심사위원회) ① 읍·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
2.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
3. 그 밖에 읍·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읍·면장으로 할 것
2.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할 것.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3.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

제7조(임기)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임명장 교부) 읍·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. 다만,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) ① 읍·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

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(제5조 관련)

☐ 심사대상자(읍·면 리)

성 명		성 별		생년월일		연락처	(자택)
주 소							(휴대폰)

☐ 심사기준 (기준일 : 공고일 현재)

심 사 항 목 (비 율)	배점기준	배점	득점	비 고 (인정조건 등)
1.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(25%) (이장·반장 경력 제 외)	250시간 이상	25		·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 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※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
	150시간 이상~ 250시간 미만	23		
	100시간 이상~ 150시간 미만	21		
	100시간 미만	19		
	봉사활동 경력 무	17		
2. 이장 활동 집중도 (10%)	겸직 없음	10		
	자유·자영업	8		
	기타	6		
3.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(15%)	장관 이상	15		· 본인 증거 자료 제시 (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) ※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
	광역단체장·차관급	13		
	기초단체장	11		
	포상경력 무	9		
4. 면접 (40%)		40		
5. 이장·반장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우(10%)		10		
총 계		100		
확인자(읍·면장)		직급		성 명 (인)

[별표 2]

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(제5조 관련)

☐ 면접대상자 ()읍·면 ()리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
주소							휴대폰)

☐ 면접기준

심사 항목(점수)	배점기준	배점	득점	비고(인정조건 등)
1.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(10점)	탁월	9~10		• 올바른 역사 인식 • 지원동기 • 군정현황 인지도 등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2.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(10점)	탁월	9~10		•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• 주민갈등 시 역할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3. 사명감 및 적극성(10점)	탁월	9~10		• 사명감, 적극성 • 직무집중도(겸직여부) • 주민친화도 등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4. 인품, 건강상태 등(10점)	탁월	9~10		• 성품, 건강상태 • 활동력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총 계		40		

※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, 읍·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적의 변경할 수 있음.

※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·면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실시 가능함.

년 월 일

면접위원

(인)

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(안)

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의거 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읍·면장

1. 모집대상 : ○○읍·면 ○○리

2. 임명(위촉)기간 :

3. 지원자격

가.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, 국가관이 투철하고,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

나.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

다.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, 애향심이 강한 자

라. 임명일 현재 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
4. 신청기간 : 20 . . . 09:00 ~ 20 . . . 18:00까지(10일간)

5. 구비서류

가. 이장지원서

나. 주민등록초본

다. 주민추천서 및 회의록

라.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6. 기타사항 : 지원서 기재착오,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7. 문의 및 접수 : ○읍·면 행정복지센터(☎ 054-000-0000, FAX 054-000-0000)

이장 지원서

성명(한자)	()				사 진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)
생년월일		연 락 처			
주 소					
전 입 일		직 업			
최종학력 및 주요경력	년	월	일	내 용	비 고
자원봉사활동 실적(자원봉사 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)	봉사활동 장소		활동시간		비 고
각종 수상내역 (공공기관 상훈에 한함)	기 간		자격 및 주요경력		근 무 처

본인은 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
읍·면 _____리의 이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

(서명 또는 인)

_____읍·면장 귀하

※ 첨부 : 1. 주민등록초본, 2.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3.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(해당자에 한함)

주민 추천서

○ 이장 추천 대상자

- 성 명 : (한자 :)
- 생년월일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 (휴대전화 :)

상기인을 예천군 00읍·면 00이장으로 추천합니다.

○ 추천인 명단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날인(서명)	추천일

※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,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※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,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명장

○○읍·면 ○○리

○ ○ ○

귀하를 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으로
임명함.

년 월 일

○ ○ 읍·면장

이장 신분증

NO. _____ 신분증 사 진 (3cm×4cm) ○○읍·면 ○○리장 성명 (앞면)	소속 : ○○읍·면 행정복지센터 성명 : 생년월일 : 20 . . . 예천군 ○○읍·면장 (발급기관 전화번호) 적인 날인 (뒷면)
---	--

규격 : 5.5cm×9.0cm
글씨체 : 휴먼명조체(검정글씨)

이장 신분증 발급대장

발급 번호	발급일	소 속 (리)	성 명	생년월일	현직 임명일	발급 사유	회수 여부	확 인		
								담당자	팀 장	읍면장

※ 발급대장은 읍·면에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임명자격)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, 국가관이 투철하고,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. <u><신설></u>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· ③ (생략)	제2조(임명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. 다만,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. 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4.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임명절차) ① 이장은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임자를 읍·면장이 임명한다. 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읍·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	제3조(임명)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·면장이 임명한다. 1.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

1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이
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3.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
만히 한 때

<신 설>

별법」 제52조에 따라 구성된
입주자(임차인) 대표회의를
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(리의
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
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
만 적용한다)

3.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
해 추천을 받은 사람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
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
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
주자(임차인)대표회의의 추천을
요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해임) 읍·면장은 이장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
있다. 이 경우 읍·면장은 그 취
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
어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이
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
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3.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
만히 한 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
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
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

<신 설>

<신 설>
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
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사실이 있는 경우

제5조(공개모집) ① 공개모집에
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
모집 공고문을 읍·면장이 지정
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
후,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
거쳐 읍·면장이 임명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
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
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, 별지
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
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
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
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
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
·면장에게 추천한다.
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
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
할 수 있다.

제6조(이장 심사위원회) ① 읍·
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
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
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
있다

1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

<신 설>

<신 설>

-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
2.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
3. 그 밖에 읍·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위원장은 읍·면장으로 할 것
2.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할 것.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3.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
- 제7조(임기)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임명장 교부) 읍·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. 다만,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(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) ①

읍·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발급대장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 <개정 2010. 11. 2.>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